

2026년 여성창업 사업화지원사업(2차) 공고

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(대구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)는 대구 지역의 여성 (예비)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「2026년 여성창업 사업화지원사업(2차)」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. 7. 16.

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장

1 사업개요

- (사 업 명) 2026년 여성창업 사업화지원사업(2차)
- (접수기간) 2026. 7. 16.(목) ~ 2026. 9. 17.(목) 17시까지
- (심사및선정) 2026. 9. 21.(월) ~ 2026. 9. 30.(수)
- (선정자발표) 2026. 10. 1.(목)
- (협약일) 2026. 10. 7.(수) 11시 예정
- (사업기간) 2026. 7. 16.(목)~ 2026. 12. 11.(금)
- (정산 및 결과 보고서 제출) ~ 2026. 12. 11.(금)
- (주최.주관)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
- (지원대상) 공고일 기준 대구지역여성 중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 창업자

2 지원내용

- (지원규모) 21,000천원 / 총 7명
- (지원내용) - 사업화 지원금 : 사업계획서 발표 및 심사 평가에 의한 사업화 자금 지원
(3백만원*7명) / 자부담 10% 별도
 - 연계지원 : 여성창업 커뮤니티를 통한 창업관련 업무지원,
사후관리(창업보육, 교육, 멘토링, 네트워킹 등 후속지원)
- (세부사업내용) 시제품 제작, 지식재산권, 디자인, 광고 홍보비 등의 4개 분야로 구성.

지원분야		세부 내용
사업화 지원	시제품 (MVP) 제작	· 시작품, 시제품 및 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, 금형 등 제작 비용 지원 · 시장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 등 지원
	지식재산권	· 사업계획서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조사 비용 및 특허, 상표, 디자인 출원 및 등록 비용 지원
	디자인	· 회사소개서 및 제품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등 디자인 비용 지원
	광고 홍보비	· 제품과 기업 홍보 위해 홈페이지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일간지, SNS 등의 광고 홍보

3 지원절차



※ 상기 일정 및 진행방식은 운영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.

4 선정방법

- 평가방법 : 서류,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
- 평가점수(100~103점) : 서류 및 발표평가(100점), 가점(3점) ※가점은 서류평가에만 적용
- 선정기준
 - 서류 및 발표평가 : 창업아이템의 독창성, 사업성, 실현가능성, 창업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
 - ※ 동점팀 발생 시 심사항목 우선 순위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(1순위 전문성, 2순위 실현가능성, 3순위 사업성, 4순위 독창성)
 - 가점 : 아래 해당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시 가점 부여 (중복적용 없음)
 - ① 주관기관 대구여성창업융합패키지 수료생 (3점)
 - ② 성평등가족부 새일센터 창업직업훈련과정 수료생 (단, 240시간이상 과정) (3점)
(중도탈락자 제외)
 - ③ 새일센터 구직자 등록(1점) 및 창업 등록자(1점) (2점)
- 결과안내 : 최종 선정결과는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
 - ※ 서류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발표심사 일정 안내

5

유의사항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접수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며, 사업(아이템)명, 참가분야 등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변경 불가
-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, 향후 참가자격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자격박탈 및 상금 환수 등 조치 예정
-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(설명회 등)체결,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최근 3년 이내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(대구달서새일센터) 사업화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- 공고일 기준 당해 접수기간이 겹치는 대구지역 내 새일센터 사업화지원사업 중복 접수 불가

□ 평가관련 유의사항

- 발표평가는 신청자(대표자) 본인이 직접 발표해야 하며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-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은 공개하지 않으며,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

□ 지식재산권 관련 유의사항

- 타인의 아이디어,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
- 신청·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, 이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

□ 사후관리 관련 유의사항

-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,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
6

접수처 및 문의처

□ (접수처) 달구벌여성창업플랫폼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홈페이지. <https://w-startup.daegu.go.kr>

□ (문의처)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창업지원팀

T. 053-285-1331(내선 3)/ E-mail. dgbw663@naver.com

□ (제출서류)

구분	제출서류	비고
필수	[서식1]참가신청서 및 [서식2]사업계획서 1부	한 개의 PDF파일로 변환 후 제출
	[서식3]사업비 집행계획 1부	
	[서식4]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	
	[서식5]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	
	[서식6] 대표자 이력서 1부	
	[서식7-1]사업자등록사실여부(예비창업자) [서식7-2]총사업자등록내역(기창업자)	
	[서식10]개인정보 수집(이용)·제공 동의서	
	[서식11]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신청서	
해당시	[서식8]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*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제출 *개인/법인사업자인 경우만 제출	
	[서식9]가점 증빙자료	
필수	발표자료(15페이지 이내)	자유양식 (PPT를 PDF로 변환하여 제출)

※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(미비)시 서류 전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.

□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

비 목		기 준
재료비	기준	- 정의 : 사업계획서상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·원료 및 데이터 등의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- 구매후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협약기간 내에 납품 및 사용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(배송비 포함)
	유의사항	※ 금속·보석·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,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연관성이 높고,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※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, 주관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음 ※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 사업비로 집행 불가 ※ 시제품 제작에 직·간접적으로 활용되는 기구·비품 등은 기계장치비로 구매
외주용역비	기준	- 정의 :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, 용역 계약을 통하여 외부 업체(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)에 의뢰·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- 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, 연구용역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집행 가능 - 외주용역 대금은 과업 완료 후 일시납이 원칙.
	유의사항	※ 외주용역 결과물이 점검 시점에 정상 구동되지 않거나, 과업범위 이하의 결과물이 도출된 경우 등 결과물 또는 과업이행 수준이 미흡함을 발견한 경우 외주용역비 집행 불가 ※ 지역 내 업체 거래를 우선 하되, 지역 내 거래 업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가능. 단, 사업장이 없는 위탁업체는 거래 불가. ※ 주관기관은 필요 시 2,000만원 미만(공급가액 기준)의 외주용역 계약 건에 대해서도 창업아이템과 외주용역 업체의 연관성, 위탁 업체의 과업수행 역량, 적정 계약 금액·기간 등을 심의할 수 있음 ※ 당해년도 동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,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팀원이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2년 이내인 업체, 프리랜서,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·종목의 연관성이 없는 업체, 시제품과 유사 제품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, 당해년도 동일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과의 외주용역 계약 체결 및 외주용역비 집행 불가 ※ 창업기업의 귀책으로 계약 해지·해약 시 발생하는 위약금, 손해배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※ 양산을 목적으로 하는 금형의 제작 및 시제품 테스트를 위한 최소수량을 초과한 대량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 불가
특허권 / 무형자산취득비	기준	- 정의 :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(산업재산권, 특허 출원 및 등록비, S/W등록 포함 저작권 등)의 출원·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- 창업아이템 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, 특허, S/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·등록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집행 가능하며 협약체결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, 우선심사청구비 또한 집행 가능 - 출원인(최종권리권자)은 창업기업 본인(법인은 등기부등본상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출원)이어야 함. 단, 타인 또는 타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거 공동 출원을 해야 할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
	유의사항	※ 협약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비용 집행 불가 ※ 협약 이전 출원 건에 대한 등록비용 집행 가능(단, 대리인 성공보수로 집행 불가) ※ 협약종료 이후,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) 관련 출원사실증명원 제출 필요

비 목		기 준
광고 선전 비	기 준	• 정의 :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, 홍보물 제작, 포장디자인, 포털사이트 배너광고,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- 마케팅비 집행 예시 : 홍보영상제작비, 온라인쇼핑몰 입점비, 포털사이트 배너광고, 온라인홍보비, 앱(App)스토어 등록비, 카탈로그 제작비, 일간지·신문 등 광고비 등 - 마케팅을 위해 계약,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, 외주용역비 기준, 유의사항 준용
	유 의 사 항	※ 웹 호스팅비,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비용은 협약기간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※ 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배포용 기념품제작(부채, 샘플화장품 등), 유니폼제작, 기프티콘 등에 소요되는 비용집행 불가 ※ 모든 광고·선전 활동은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협약 기간 이후 잔여금액의 발생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(온라인 광고, 문자 등 충전·차감방식 화폐)의 경우, 협약기간 내 실소요 비용 집행이 가능하다.

□ 창업기업 사업비 보조세목 정의

비목	세목	보조세목	정의
재료비	재료비	재료비	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
외주 용역비	외주용역비	일반용역비	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일반수용비	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 관련 비용
광고 선전비	광고선전비	일반수용비	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추진하는 경우
		일반용역비	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

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

※ 공통(필수) :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

비 목	내 용
재료비	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견적서, 검수조서(증빙사진 포함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
외주용역비	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계약서(과업내용포함), 결과보고서, 검수조서(증빙사진 포함),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, 규정 확인서(필요시 이행보증보험증권(또는 각서), 외주용역 심의요청서 등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-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창업기업,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출원·등록 건이 기재된 계약서 또는 견적서(변리사 위임 시), 출원사실증명원(출원한 경우), 지재권 등록증(등록한 경우), 특허청 관납료 영수증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 등 - 우선심사청구 : 심사청구서(우선심사신청) 접수증 - 선행기술조사 의뢰 :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등
광고선전비	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, 계약서(과업내용 포함), 결과보고서(결과물), 검수확인서(증빙사진 포함), 홍보제작물, 규정 확인서(용역 계약 체결 시) 등